特許出願은 法人이 主導해야

金 珍 洙
〈每日經濟新聞 記者〉

法人出願 40% 뿐

우리나라 企業들은 아직도 工所權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工所權출원등향이나 企業의 權利확보상황을 보아 충분히 알 수 있다.

日本의 경우 總工所權출원의 80% 이상이 法人출원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法人출원이 전체의 40여%에 그치고 있다.

또 설상 法人의 權利임이 분명한데 個人명의로 출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당국의 권유에 따라 특허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企業이 2백 60여사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형식에 그치고 있는 企業도 적지 않다.

이같은 단편적인 분석만으로도 우리나라 企業들의 工所權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함을 평가할 수 있다.

自身의 權利를 한번 침해당하거나 남의 權利를 이용하려다 法的인 제재를 받다보면 工所權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工所權의 인식부족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南美 「파타과이」에서 우리나라 유명기업이 상표권 침해를 당해 곤욕을 치른 일이라든지 國內市場에서 外國유명상표를 무단사용해 오다 적발 法的인 제재를 받은 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外信보도에 따르면 癌치료제 인터페론 하나를 놓고 30억달러라는 거액의 특허분쟁이 美國에서 발생했다 한다.

그리고 코카콜라처럼 商標하나로 세계시장을 제패하는 상품이 적지 않다.

工所權은 企業經營的인 측면에서나 技術開發이라는 과제를 놓고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하다.

「프랑스」의 예만 보더라도 特許出願이 많았던 지역에 역시 수출도 많았다는 통계였고 先進國일수록 特許出願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技術開發에 주력하고 있는 企業일수록 特許出願이 많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工所權, 이중에서도 特許는 그 나라 또는 그 企業의 技術開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國內出願 外國人이 主導

우리나라 企業들이 아직 工所權에 대한 인식이 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 30년간의 工所權출원 공고동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48년부터 78년 사이에 特許를 10건 이상 출원공고 받은 企業은 불과 9개(研究所 포함)에 불과했고 실용신안 10건 이상도 22개에 그치고 있다.

特許의 경우 韓國科學技術研究所(KIST)가 96건, 太平洋化學 19건, 서울藥品 16건, 韓一合纖 14건 등이다.

실용신안공고는 湖南電氣가 84건 럭키 61건, KIST 22건, 金星社 20건, 起亞產業 19건 등이다.

물론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法人의 特許 및 실용신안출원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아직 外國企業에 비하면 극히 미흡하다.

48~78년 사이에 外國企業이 우리나라에 특허출원 공고된 것을 보면 美國의 電子메이커인 RCA는 무려 1백건에 달했다.

또 美國의 일라이릴리 엔드 캄퍼니가 95건, 에프호프만 라로슈가 96건을 출원공고 받았다.

이러한 통계만 보고 평가하더라도 우리나라 法人들의 特許는 극히 미약하며 따라서 企業成長과 직결되는 技術開發도 등한시 해 왔음을 평가할 수 있다.

지난 67년 이후 10년간 內國人의 特許出願건수는 1.8배로 늘어나 歐美 日本 등 先進國에 비해 2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法人출원도 40% 정도로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個人出願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特許활용률도 先進外國에 비해서는 크게 뒤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 나

가야 할 것이다.

138個國에 海外出願

WIPO 가입 등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工所權制度國際化가 추진되고 있다.

工所權해외출원국이 점차 늘어가고 共產國家에까지 출원되기 시작했다.

또 特許業務의 현대화작업이 서둘러지고 있으며 해외출원보조금 지원 등 새로운 제도도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은 特許制度발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特許業務 國際化발돋움으로 우리나라의 工所權해외출원이 부쩍 늘고 있는 경향이며 출원대상국도 輸出對象國과 맞먹는 138개국에 이른다.

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工所權해외출원건수가 107건(누계)에 불과하던 것이 77년부터 해외출원이 급증되기 시작해 그해 한해동안 307건이 출원, 그중 62건이 등록됐다.

79년에는 特許 110건, 상표 204건등, 모두 331건으로 출원건수가 늘어났으며 79년에는 무려 780건이 出願, 이중 89건이 등록, 기록적인 실적을 나타냈다.

올들어서도 9월말현재 特許 120건을 비롯, 모두 207건이 출원됐으며 특히 WIPO가입이 계기가 되어 蘇聯을 비롯한 共產圈 9개국가에 우리나라 특허가 출원되는 새로운 기록이 수립되기도 했다.

이러한 통계는 단편적인 조사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해외출원건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韓國人의 發明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제네바發明·技術展示會에서 매년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는 셈이다.

우수한 發明자질을 이용, 보다 良質의 發明品을 내놓고 이들을 세계각국에 소개하는 등시에 이 權利를 출원,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有名商標無斷使用 如前

우리나라에 출원, 등록된 外國人의 權利는 지난 9월말 현재 3,7958건에 달한다.

이중 4,440건이 特許고 商標가 32,467건에 이른다.

등록 外國人權利中 8.3%에 해당하는 3,179건이 特許管理人제도를 두고 있다.

管理人을 두어 스스로 自身의 權利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경향은 우리나라 企業들도 스스로 배워나가야할 것이다.

등록된 外國人 商標 3,2467건중 통상사용건이 설정된 것은 불과 21개상표, 286건으로 우리나라 34個企業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통상사용권이 허용된 商標는 우리나라 특정기업이 사용해도 좋다는 것이다.

레이오벡, 맥스웰, 스즈끼, 카시밀론, 혼다, 피에르카르댕, 제미니 등이 그것이다.

통상사용권이 설정된 것을 제외한 他商標를 사용할 경우는 不法이다.

당국이 상표불법사용을 막기위해 80년상반기에 4,810개業所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897개업체가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방시, 랑뱅, 세리느 크리스쳔디올, 피노키오등을 무단사용해오다 적발된 셈이다.

이같은 外國有名商標무단사용은 外製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소비풍조를 틈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에서 초래된다.

그러나 최종적인 원인은 工所權인식부족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自身의 權利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현저할때 他人 權利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된다.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같은 풍조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發明奬勵制度 마련돼야

工所權에 대한 인식제고는 企業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

우수한 아이디어가 창출, 發明또는 실용신안, 의장특허를 얻기까지는 技術開發노력과 주변 여건조성이 뒤따라야 한다.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현상유지 또는 현재의 능력만으로 수입에만 주력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내기는 어렵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측면지원이 결여돼서는 않된다.

發明의욕을 높일수 있는 기반조성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發明장려를 위해 보상금지원, 發明品을 企業化했을 경우 稅制, 金融上의 지원등은 우리나라 여건으로 보아 꼭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할수 있다.

발명보호법이 마련되어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제도가 추진돼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거의 백지화된 것으로 안다.

發明장려제도는 技術開發과 직결돼 産業發展의 원동력이 될것으로 보아 다시한번 제고돼야할 과제다.

이밖에도 發明의식을 높일수 있는 계몽강화, 發明의 원동력이될 정보의 제공, 企業특허전담부서설치확대등도 제도적으로 추진돼 나가야 할 것들이다. ❀